

1. 개정 이유

- 가.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~제8호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제출 시 요구되는 임원의 이력서, 취임동의서는 ‘제9호’에 명시된 첨부서류와 중복 가능
- 나.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 서류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

2. 주요내용

-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(안 제12조제2항제9호)
 -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
 - ※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「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첨부서류 중 ‘임원 이력서’ 및 ‘임원 취임승낙서’의 경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(임원의 이력서, 취임동의서)와 중복될 수 있음
 - 이에 따라 제1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첨부서류 중 ‘제1호부터 제8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’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
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무부령 제 호
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12조제2항제9호 중 “첨부서류(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민간인 신원진술서)”를 “첨부서류[제1호부터 제8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, 민간인 신원진술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)]”로, “있다)”를 “있다]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) ① (생략)	제12조(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법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<u>첨부서류(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민간인 신원진술서는 생략할 수 있다)</u>	9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첨부서류[제1호부터 제8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, 민간인 신원진술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)---있다]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